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0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 박용갑·장철민·박정현

김영호 · 복기왕 · 조승래

소병훈 · 안태준 · 윤준병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특히 정부는 2020년 '주거복지로드맵 2.0'을 통해 '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'고 밝혔고, '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'를 통해 '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 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'고 밝혔으나, 현재 대전과 울산, 경북,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, 시·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

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"를 "주거복지센터를 둘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광역주거복지센터 및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, 지리적 접근성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
 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 납한 임차인 가구
 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 가구
 - 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

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구

- 라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단전(전류제한을 포함한다), 「수도법」 제39조에 따른 단수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주거 복지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자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 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시·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의 주거복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주거복지센터) ① 국가 및 제22조(주거복지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. <단서 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시 • 신설>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의 시장은 광역주거복지센 터 및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 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, 지리적 접근성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 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 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 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 가 구 나.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 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

<u>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</u> <u>가구</u>

- 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제납한 구분소유자 또는점유자 가구
- 라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단전(전류제한을 포함한다), 「수도법」 제39조에 따른 단수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 구로서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자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 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
3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

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 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 하는 경우, 시·도지사는 주거 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 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주거복 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 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